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. 10. 11 선고 2024가단37786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

담당변호사 오동준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2024. 9. 27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1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,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, 1,600만 원 및 2024. 7. 2.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5. 7. 2.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. 7. 2.부터 2020. 7. 2.까지, 차임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, 이 사건 토지 위에는 피고 소유의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이 존재하는 사실, 위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, 피고는 2024. 6.까지 8개월분 차임 합계 1,600만 원을 연체한 사실, 이에 원고는 2024. 6. 24.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 내지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위 임대차계약은 2024. 6. 24.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,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,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,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, 연체 차임 1,600만 원 및 2024. 7. 2.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판사 이경민

별지